

부산고등법원 2022. 12. 8 선고 2022나50581 판결 [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2. 12. 8 선고 2022나50581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12. 15 선고 2021가합10082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

담당변호사 권영문, 김지혜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

담당변호사 김진수

변론종결 2022. 11. 24.

판결선고 2022. 12. 8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12. 15. 선고 2021가합100822 판결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00,000,000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9.부터, 29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11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, 3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

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행부터 5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『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구두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운삼, 판사 최은정, 판사 이재욱